

## 조선에서 간행된 대명률 ‘향본(鄕本)’에 대하여\*

장경준\*\*

### 목 차

- I. 머리말
- II. 『대명률부례』에 언급된 향본
- III. 대명률 향본과 홍무율의 관계
- IV. 대명률 향본의 편찬과 간행
- V. 맺음말

### [국문 요약]

대명률은 명(明)의 법전으로 1397년(홍무 30년)에 확정 반포되었다. 그 이전에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홍무율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드물며, 현재 전하는 책의 대부분은 조선에서 간행된 것들이다. 그리고 『대명률부례』의 조선 간본에는 “향본(鄕本)”이라 하여 홍무30년율과 차이를 보이는 내용이 일부 소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 내용을 검토하여 향본에 부합하는 책을 소개하고, 향본의 텍스트와 홍무율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다음, 대표적인 향본의 편찬과 간행에 대해 개략적으로 기술해 보았다.

『대명률부례』에 언급된 향본에 완전히 부합하는 책은 『대명률직해』와 『대명률강해』이고, 고경박물관 소장 『대명률』, 『율해변의』, 『율조소의』 등도 향본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명률 텍스트 대교 작업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향본에 해당하는 책은 반영된 홍무율의 시기에 따라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하다. 1그룹은 홍무

\* 이 글은 구결학회·한국법사학회 공동 전국학술대회(2016. 1. 12.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며, 이 연구는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verdulo@korea.ac.kr

18~19년울 이전의 것을 반영하고, 2그룹은 홍무22년울이나 홍무18~19년울을 반영하고, 3그룹은 홍무30년울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명률을 이두로 번역한 『대명률직해』는 1395년에 원간본이 간행된 이후 16세기 중후반과 17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 대명률의 주석서인 『대명률강해』는 조선에서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종대에 처음 간행한 이후 16세기 후반까지 주석을 증보한 계통이 쓰이다가 18세기 후반부터 증보되기 이전의 원간본 계통이 널리 보급되었다. 조선에서 『대명률직해』와 『대명률강해』가 지속적으로 간행된 것은, 형사 사건의 처결에 대명률을 적용한 실무 현장에서 수요가 많았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과거제의 실시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대명률(大明律), 대명률부례(附例), 향본(鄉本), 대명률직해(直解), 대명률강해(講解)

## I. 머리말

대명률(大明律)은 명(明)의 법전으로 1397년(홍무 30년)에 확정 반포되었다. 명태조실록이나 명사(明史)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 이전에 오(吳)원년울, 홍무7년울, 홍무9년울, 홍무18~19년울, 홍무22년울 등의 홍무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sup> 그런데 홍무30년울을 반포하면서 이전의 홍무울은 모두 폐기하였기 때문에 홍무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드물다. 1386년의 서문이 있는 『율해변의(律解辯疑)』(이하 ‘변의’로 부름),<sup>2)</sup> 1395년의 발문이 있는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이하 ‘직해’로 부름),<sup>3)</sup> 연

1) 黃彰健, 『明清史研究叢稿』(臺灣: 商務印書館, 1977); 楊一凡, 『洪武法律典籍考證』(北京: 法律出版社, 1992); 佐藤邦憲, 『明の律編纂考—洪武年律編纂の二・三の史料の再検討から—』, 『法律叢論』 67-2(明治大學法律研究所, 1995); 박성중, 『명률의 변천과 문체, 그리고 『대명률직해』의 저본』, 『국어사연구』 17(국어사학회, 2013) 등 참조. 이 글에서는 홍무 30년 이전에 만들어진 대명률들을 홍무 30년에 반포된 대명률(즉 홍무30년울)과 구분하여 가리키는 경우 관례에 따라 ‘홍무울’이라 부르기로 한다.

2) 『변의』는 하광(何廣)의 저술로 알려진 주석서이다. 간본(刊本)은 대만국립중앙도서관과 북경도서관(마이크로필름)에 있고, 상해사회과학원도서관과 동경대학법학부도서관에 사본(寫本)이 있다(楊一凡, 위의 책, 226면; 何勤華, 『明代律學的開山之作—何廣撰《律解辯疑》簡介』, 『法學評論』 2000年第5期(武漢大學出版, 2000), 137-140면). 조선왕조실록 등에서는 “律解辯疑”의 ‘解’자가 ‘學’자로, ‘辯’자가 ‘辨’자로 쓰이기도 한다.

3) 『직해』는 조선에서 김지(金祗) 등이 대명률을 이두로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실은 책이다. 『직해』의 권두서명은 “大明律”로 되어 있으나 다른 책과 구분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대명률직해라 부른다(안병희, 『『대명률직해』의 서명』, 『한국어연구』 1(한국어연구회, 2003), 117-140면). 현재 6가지 계통

대 미상의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이하 '강해'로 부름)<sup>4)</sup>만이 알려져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홍무율에 대한 고찰은 『변의』, 『직해』, 『강해』와 홍무30년율의 텍스트 비교가 바탕이 되는데, “律解辯疑·大明律直解及明律集解附例三書所載明律之比較研究”(黃彰健 1977), “大明律直解所載明律與洪武三十年律對勘表”(楊一凡·宋國範 1994), “(『강해』·『직해』·『부례』의) 내용 비교표”(정궁식·조지만 2001) 등이 있어 많은 참고가 된다.<sup>5)</sup> 그리고 최근에 홍무율을 반영하는 고경박물관 소장 고판본 『대명률(大明律)』(이하 '고경'으로 부름), 화봉문고 소장 『강해』 을해자(乙亥字)본 등이 새로 발견되어 홍무율에 대한 연구 여건이 조금 나아졌다.<sup>6)</sup>

의 목판본이 한국과 일본에 남아 있다(장경준·진윤정, 『『대명률직해』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 『서지학연구』 58(한국서지학회, 2014), 551-579면; 이 글의 [붙임 1]).

- 4) 『강해』는 찬자를 알 수 없는 주석서로 『변의』와 관련이 깊다. 黃彰健, 『明代律例彙編』(臺灣: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1979), 序117면)에서는 북경도서관에 있는 『변의』가 분명치 않은 부분이 많아 『강해』에 의거하여 교정하고 보충해야 한다고 하였고, 楊一凡是 『변의』의 텍스트 교감에 『강해』를 크게 참고하였다(『中國珍稀法律典籍續編 第3輯』(홍룡강인민출판사, 2002)의 교감기). 田中俊光, 『朝鮮刊『大明律講解』について』, 『東洋法制史研究会通信』 第28号(東洋法制史研究会, 2015)는 조선에서 『변의』의 주석 가운데 일부를 취사 선택하고 표현을 간결하게 다듬어 『강해』를 간행한 것으로 보았다. 현재 활자본 3가지, 목판본 4가지 계통의 이본이 한국, 일본, 대만, 중국에 남아 있다(黃彰健, 위의 책, 序116면; 강보유, 『연변대학교 도서관 소장 한국본 고문헌 자료』, 『해의 한국본 고문헌 자료의 탐색과 검토』(삼경문화사, 2012), 228면; 문소라, 『조선시대에 간행된 『대명률강해』 판본 연구』, 『고인쇄문화』 21(청주고인쇄박물관, 2014), 223-242면).
- 5) 그런데 이들 선행 연구에는 아쉽게도 데이터가 부실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楊一凡·宋國範, 『大明律直解所載明律與洪武三十年律對勘表』, 『中國珍稀法律典籍集成 乙編 第一冊: 洪武法律典籍』(北京: 科學出版社, 1994), 953면; 정궁식·조지만, 『대명률 해제』, 『大明律附例』(서울대학교 규장각, 2001), 53면에서는 兼毀制書印信조에 나오는 “明立案驗”이 『직해』에는 “明立案驗”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직해』 초기 판본의 “案”이 후대 판본에서 “安”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위의 기록은 독자에게 『직해』의 텍스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朝見留難조에 나오는 “儀禮司官”이 『직해』 초기 판본에는 “侍儀官”으로 되어 있으나 楊一凡·宋國範, 앞의 글과 정궁식·조지만, 앞의 글에는 이러한 정보가 없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문제는 해당 문헌 자료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黃彰健, 앞의 책(각주 1)과 楊一凡·宋國範, 앞의 글은 『직해』에 대해 ‘홍문판본’을 저본으로 한 『교정 대명률직해』(조선총독부중추원 편, 1936)에 크게 의존하였고, 정궁식·조지만, 앞의 글은 ‘규장각본’만을 대교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직해』의 이본 중에 ‘홍문판본’이나 ‘규장각본’은 『직해』를 대표하기에 적절치 않은 후대 판본이며, 『교정 대명률직해』의 대교기도 누락된 부분이 많다(장경준, 『花村美樹의 대명률직해 교정에 대하여』, 『규장각』 46(서울대학교 규장각, 2015), 189-192면). 『변의』나 『강해』에 대한 선행 연구들도 책의 성격과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후술 참조).
- 6) 필자는 2013년 10월 28일 경북 영천 고경박물관에서 고판본 『대명률』을 열람하고, 이 책의 내용이

홍무율을 반영하는 현전본 가운데 『변의』를 제외한 『직해』, 『강해』의 여러 이본(異本)과 『고경』은 모두 조선에서 간행된 것들이다. 그리고 홍무30년율을 반영하는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이하 ‘부례’로 부름)의 조선 간본(刊本)에서는 특별히 “향본(鄉本)”이라 하여 홍무30년율과 차이가 나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에서 『부례』를 간행할 당시(즉 17세기 후반) 사용되던 대명률 서적 가운데 홍무율을 반영하는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은 국초부터 대명률을 실용하였으므로, 『부례』에 언급된 ‘향본’에 해당하는 책이 무엇이며 각 이본의 텍스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비단 법제사 연구뿐 아니라 서지학, 조선시대사 연구 등에도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례』에 언급된 향본의 내용에 모두 부합하는 책은 『직해』와 『강해』의 여러 이본들이다. 그리고 『고경』과 『변의』는 부분적으로 향본에 부합하고, 홍무30년율을 반영한 책 중에도 일부 향본의 내용과 일치하는 예가 있다. 또한 향본에 해당하는 책들 사이에는 『부례』에서 향본으로 언급한 부분 외에도 차이를 보이는 곳이 많다. 대명률 서적에서 보이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지금까지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부례』에 언급된 대명률 향본의 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책을 소개하고, 향본의 텍스트와 홍무율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다음, 대표적인 향본의 편찬과 간행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

홍무30년율과 차이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소장자로부터 연구용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과 함께 복제본을 얻어 『직해』의 이본 대교 작업에 활용해 오고 있다. 귀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고경박물관 김기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필자는 2015년 12월 28일 서울 성북동 화봉문고에서 올해자본 『강해』를 열람하고, 이 책이 일본 존경각문고(尊經閣文庫) 소장본과 같은 판본임을 확인하였다. 귀한 자료를 보여주시고 사진 촬영까지 허락해주신 화봉문고 여승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이미 존재가 언급되었으나 연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존경각문고 소장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두 차례(2015년 12월 7일, 2016년 2월 24~26일) 조사를 하였고, 앞으로 추가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그동안 열람 허가 및 자료 조사에 도움을 주신 존경각문고 담당자塚本洋司 님, 교토대학 연구원 신용철 박사, 도쿄대학 박사과정 이재호 군,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허인영 군과 진윤정 양 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고경』과 을해자본 『강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계에 일부나마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조사와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이 글이 중간 발표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 II. 『대명률부례』에 언급된 향본

조선에서 간행된 『부례』에는 모두 7군데에 “향본(鄉本)”으로 시작하는 기록이 난상(欄上)에 두주(頭註)로 새겨져 있다.<sup>7)</sup> 율문의 내용 중에 향본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내용과 향본에 해당하는 문헌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8)</sup>

(1) 名例律 老小癡疾收贖조

『부례』 기록: 鄉本 殺人上 有叛逆 (1:43 ㄱ)<sup>9)</sup>

『부례』 본문: 犯殺人應死者 議擬奏聞

향본의 본문: 犯反逆殺人應死者 議擬奏聞

※ 『부례』에 기록된 ‘鄉本’의 내용 중에 “叛”은 “反”의 잘못이다. ‘議擬奏聞’해야

7) 『부례』는 서화(徐化) 등이 홍무30년율에 사례(事例)를 종합하여 1585년에 반포한 법전이다. 조선에서 『부례』를 언급한 최초의 기록은 1688년(숙종 14년) 승정원일기에 등장하고(심희기, 『一人償命 담론에 대한 재고』, 『법사학연구』 51(한국법사학회, 2015), 61면), 『부례』의 조선 간본은 규장각 소장본에 1692년(숙종 18년)의 내사기가 있다(문소라, 『조선시대 간행의 『대명률』 주석서 판본 분석』(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12), 74면). 따라서 『부례』는 1680년대에 조선에 수입된 직후에 새로 판각하여 보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부례』의 내용과 다른 “향본”의 내용을 두주로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본으로 소개된 내용이 홍무30년율을 반영하는 문헌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홍무30년율의 텍스트를 제시하는 데에 『율조소의(律條疏議)』(이하 ‘소의’로 부름)를 이용하기로 한다. 『소의』는 장해(張楷)가 1461년에 편찬한 주석서로서, 조선에는 성종대인 1480년경에 수입되어 널리 활용되었다(정궁식, 『조선전기 중국법서의 수용과 활용』, 『서울대학교 법학』 50-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9), 54-64면).

9) 용례의 위치는 판심의 권차:장차를 기준으로 하되 앞면과 뒷면은 각각 ‘ㄱ’, ‘ㄴ’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할 대상에서 ‘反逆’을 저지른 자를 제외하도록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鄉本’은 『직해』, 『강해』, 『고경』, 『변의』, 『소의』가 해당된다.

(2) 名例律 老小廢疾收贖조

『부례』 기록: 鄉本 註 無九十以上 叛逆下有緣坐應配役 (1:43 ㄱ)

『부례』 본문: (律註) 九十以上犯反逆者 不用此律

향본의 내용: (律註) 犯反逆緣坐應配役者 不用此律

※ 해당 율문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의 범위를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鄉本’은 『직해』, 『강해』, 『고경』, 『소의』가 해당된다.

※ 『변의』는 해당 부분이 없다.

(3) 刑律盜賊 謀反大逆조

『부례』 기록: 鄉本 父子十六以上 絞 十五以下及母女妻妾祖孫兄弟姊妹若子之妻妾 給付功臣 男夫八十及廢疾 並免緣坐 伯叔父兄弟之子 流三千里 (18:1 ㄱ)

『부례』 본문: 祖父父子孫兄弟及同居之人 不分異姓 及伯叔父兄弟之子 不限籍之同異 年十六以上 不論篤疾廢疾 皆斬 其十五以下及母女妻妾姊妹若子之妻妾 給付功臣之家爲奴 財產入官

향본의 본문: 父子年十六以上 皆絞 十五以下及母女妻妾祖孫兄弟姊妹若子之妻妾 給付功臣之家爲奴 財產並入官 男夫 年八十及篤疾 婦人 年六十及廢疾 並免緣坐之罪 伯叔父 兄弟之子 不限籍之同異 皆流三千里安置 緣坐之人 非同居者 財產不在入官之限

※ 『부례』의 기록은 ‘鄉本’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전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鄉本’은 『직해』, 『강해』, 『고경』이 해당된다.

※ 『변의』는 해당 부분이 없고, 『소의』는 『부례』와 같다.

(4) 刑律詐僞 詐僞制書조

『부례』 기록: 鄉本 爲從者 杖流 未行增減 減等 傳寫有誤 以失錯論 督府以下 杖流 餘衙 杖徒 未行 減等 (24:1ㄱ)

『부례』 본문: 凡詐爲制書 及增減者皆斬 未施行者絞 傳寫失錯者 杖一百 ○ 詐爲 將軍總兵官五軍都督府六部都察院都指揮使司內外各禦指揮使司守禦緊要隘口千戶 所文書 套畫押字 盜用印信及空紙用印者 皆絞 察院布政司按察使府州縣衙門者 杖 一百流三千里 其餘衙門者 杖一百徒三年 未施行者 各減一等

향본의 본문: 凡詐爲<sup>10)</sup>制書者 斬 爲從者 杖一百流三千里 未施行者 減一等 若增 減制書者 罪亦如之 其官府行移傳寫 有誤者 以失錯論 ○ 若詐爲五軍都督府 六府 諫院官<sup>11)</sup> 監察御史 及<sup>12)</sup>總兵將軍 及都指揮使司 并守禦管軍衙門文書 套畫押字 盜 用印信者 杖一百流三千里 其餘衙門者 杖一百徒三年 爲從者 各減一等 未施行者 各 又減一等

※ 『부례』의 기록은 '鄉本'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전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鄉本'은 『직해』, 『강해』, 『고경』이 해당된다.

※ 『변의』와 『소의』는 『부례』와 같다.

(5) 刑律詐僞 詐傳詔旨조

『부례』 기록: 鄉本 親王令旨者 流 (24:2ㄴ)

『부례』 본문: 凡詐傳詔旨者 斬 皇后懿旨皇太子令旨親王令旨者 絞

향본의 본문: 凡詐傳詔旨者 斬 皇后懿旨皇太子令旨者 絞 親王令旨者 杖一百流 三千里

※ 『부례』의 기록은 '鄉本'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전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10) 僞: 『강해』와 『고경』에는 '爲'로 되어 있다.

11) 官: 『강해』와 『고경』에는 이 '官'자가 없다.

12) 及: 『고경』에는 이 '及'자가 없다.

방향으로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鄉本’은 『직해』, 『강해』, 『고경』이 해당된다.

※ 『변의』와 『소의』는 『부례』와 같다.

(6) 刑律犯奸 親屬相姦조

『부례』 기록: 鄉本 一百下 有若姦義女者加一等 (25:3ㄴ)

『부례』 본문: 凡奸同宗無服之親及無服親之妻者 各杖一百

향본의 본문: 凡奸同宗無服之親及無服親之妻者 各杖一百 **若姦義女者 加一等**

※ (결양한) 의녀(義女)와 간음하는 경우의 규정을 삭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鄉本’은 『직해』, 『강해』, 『변의』가 해당된다.

※ 『고경』과 『소의』는 『부례』와 같다.

(7) 刑律犯奸 親屬相姦조

『부례』 기록: 鄉本 絞下 有若姦乞養子孫之婦者減一等 (25:4ㄱ)

『부례』 본문: 妾 各減一等 強者 絞

향본의 본문: 妾 各減一等 強者 絞 **若姦乞養子孫之婦者 各減一等**

※ 결양한 자손의 부인과 간음하는 경우의 규정을 삭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鄉本’은 『직해』, 『강해』가 해당된다.<sup>13)</sup>

※ 『변의』는 해당 부분이 없고, 『고경』과 『소의』는 『부례』와 같다.

13) 단, 이 부분이 『직해』의 이본 중에 세종판(세종13년 수정본 계통)에는 없고, 『강해』에서는 앞 구절인 “妾 各減一等 強者 絞”의 앞에 있다. 홍무30년율에서 삭제되기까지 혼란이 있었던 듯하다. ‘향본’에 해당하는 구절이 『직해』 세종판에만 없는 것도 특징적인데, 해당 부분 목판의 여백에 13자를 새길 자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목판 제작 시에 새겼다가 나중에 이 부분을 파낸 것일 가능성도 있다(바로 위의 직해문에 “爲乎事”가 새겨져 있지 않은 것도 방증 자료가 될 수 있다: 공주판에는 새겨져 있음). 한편 박성중, 앞의 글, 182-183면에서는 위 (6)의 “若姦義女者 加一等” 부분에 대해 원래 『직해』의 저본에 없던 것인데 『변의』 등을 보고 『직해』에 수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7)의 “若姦乞養子孫之婦者 各減一等” 부분에 대해 『직해』 세종판에 없는 것을 이후 판본에서 추가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6)과 (7)의 해당 부분은 모두 결양한 자손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에서 홍무율의 개정 시 문구의 첨입이나 삭제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상 기술한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주목된다.

첫째, 조선에서 간행한 『부례』에서 향본(鄉本)의 내용으로 기록한 7가지에 모두 부합하는 책은 『직해』와 『강해』이다. 그 밖에 『고경』, 『변의』, 『소의』는 각각 5가지, 2가지, 2가지가 향본의 내용과 일치한다. 『부례』에 기록된 내용이 많지 않아 이 수치만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조선 초기에 편찬 간행된 『직해』와 『강해』가<sup>14)</sup> 17세기 후반의 『부례』 간행자에게 향본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선행 연구에서 대체로 『변의』가 홍무18~19년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sup>15)</sup>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문헌과의 선후 관계를 논한 것은<sup>16)</sup>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전본 『변의』는 위 (4), (5)의 예처럼 향본과 다르고 홍무30년율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위 (2), (3), (7)에서 처럼 율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변의』는 기본적으로 율문을 모두 소개하면서 필요에 따라 주석을 추가한 것이 아니고, 율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나 주석이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여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율문 안에 원래 포함된 주석도 거의 신지 않았다. 따라서 현전본 『변의』에 홍무30년율이 첨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어떤 내용이 『변의』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변의』의 저본인 홍무율에도 그것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sup>17)</sup> 점을 유념해야 한다.<sup>18)</sup>

14) 『강해』는 대체로 중국에서 수입하여 조선에서 다시 간행한 책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선에서 편찬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5) 『변의』에 반영된 율문을 홍무18~19년율로 보는 근거는, 현전본에 “洪武丙寅春正月望日”을 포함한 하광(何廣)의 서문과 “洪武丙寅春二月上澣”을 포함한 욕경(欲敬)의 후서가 있기 때문이다. ‘洪武丙寅’은 1386년(홍무 19년)이므로 본문의 내용이 홍무18~19년율일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黃彰健, 앞의 책(각주 1), 209-210면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명례율 앞에 실린 내용 중 ‘照刷文卷罰俸例’에서 명태조 주원장(朱元璋)을 “太祖高皇帝”로 지칭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이 부분은 홍무 연간 이후에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

16) 黃彰健, 앞의 책(각주 1); 楊一凡, 앞의 책(각주 1); 박성중, 앞의 글 등이 이에 해당한다.

17) 예를 들어 乘驛馬齎私物조의 율문은 (이본에 따른 오자나 속자를 제외하면) 예외 없이 “凡出使人員應乘驛馬 除隨身衣仗外 齎帶私物者 十斤杖六十 每十斤加一等 罪止杖一百 驛驢減一等 私物入官”인데, 현전본 『변의』에는 율문이 “凡出使人員應乘驛馬 除隨身衣仗外 齎帶私物者 十斤杖六十 (止) 驛驢減一等”으로 인용되어 있다(혹룡강인민출판사 집교본 170쪽). 언뜻 보면 『변의』의 저본이 된 홍무율에 ‘私物入官’이라는 구절이 없었던 것으로 볼 만하다. 그러나 이것은 『변의』의 찬자가 ‘驛驢減一等’에 대한 주석을 신기 위해 율문을 ‘驛驢減一等’까지만 인용한 것일 뿐이며, 그가 의거한 홍무율에 ‘私物入官’이 없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셋째, 홍무30년율을 반영하는 『소의』에서 발견되는 향본의 내용은 16세기 후반 중국에서 『부례』를 편찬하면서 수정한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홍무 30년에 확정된 대명률은 더 이상 수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홍무30년율을 반영한 주석서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관찰되며, 일부는 위 (1), (2)의 예처럼 『부례』 편찬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듯한 경향을 보인다.<sup>19)</sup> 이와 관련하여 『부례』의 권수에 있는 “新進刻大明律附例題稿”에서 『부례』 편찬 당시 사용하던 율문 중에 글자가 잘못된 55자를 바로잡았다는<sup>20)</sup> 기록은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이 때 고친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11군데 가운데 8군데는, 『부례』에서 수정했다는 내용이 『직해』와 『강해』에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sup>21)</sup> 이는 『부례』를 편찬하면서 55자를 바로잡은 일에 ‘율문의 수정’이라는 측면과 ‘유통되는 판본의 오류 수정’이라는 측면이 혼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상세한 이본 대교를 통해 『부례』 편찬 과정에서 수정했다는 55자가 무엇이며, 이들과 홍무율 내지 향본의 텍스트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18) 또한 『변의』 현전본에서 율문을 채록하여 소개한 과학출판사(1994)의 율문(楊一凡·宋國範 點校)과 홍룡강인민출판사(2002)의 율문(楊一凡 點校) 사이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보이는데, 두 책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채록된 텍스트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

19) 예를 들어 犯罪自首조의 율주 중에 “本應過失者 聽從本法”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직해』, 『강해』, 『고경』, 『소의』, 『대명률석의』 등 1585년 이전에 편찬된 책에는 공통적으로 “應”자가 있는 반면, 1585년 이후에 나온 『부례』, 『대명률집해부례』, 『대명률부례전석』, 『대명률례언해』 등에는 모두 “應”자가 없다. 이는 『부례』를 편찬하면서 “應”자를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례』 편찬 이후에 텍스트를 수정한 듯한 사례도 보인다. 한 예만 들면 다음과 같다: 『직해』, 『강해』, 『고경』, 『소의』, 『부례』 등에는 獄囚誣指平人조의 마지막 율주 끝부분에 “卽坐通事杖五十之類”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五刑의 규정상 ‘杖’은 60부터 해당하고 50 이하는 ‘笞’이므로 ‘杖五十’은 잘못된 표현이다(『대명률석의』에서는 이 점을 고려했는지 ‘杖’자가 빠져 있음). 그리고 『대명률집해부례』, 『대명률부례전석』, 『대명률례언해』 등에는 모두 ‘杖’자가 ‘笞’자로 바뀌었다. 이는 『부례』 편찬 이후에 간행된 주석서에서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 필자가 대교에 이용한 주석서의 서지는 이 글의 <참고문헌> 참조.

20) “... 祗回轉寫多訛 緝刻互異沿習 歲久莫覺其非 今據五十五字 其中除字雖同異罪無出入者 徑行改正...”(『부례』 규장각 영인본 7쪽)

21) 구체적인 내용은 정궁식·조지만, 앞의 글, 41면의 <표 6> 참조.

### Ⅲ. 대명률 향본과 홍무율의 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간본 『부례』에 언급된 향본의 내용은 대부분 홍무율을 반영하며, 이에 해당하는 책은 『직해』, 『강해』, 『고경』, 『변의』, 『소의』 등이 있다. 또한 분명한 향본<sup>22)</sup>인 『직해』와 『강해』 사이에도 서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많고(정공식·조지만 2001:52-60), 『직해』 안에서도 계통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장경준 2014:142-168). 따라서 향본과 홍무율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향본들 간의 상세한 대교(對校)가 요구된다.

필자는 그동안 『직해』의 정본(定本)화를 위해 이본 조사와 대교 교감(校勘) 작업을 해왔고, 위에 언급한 향본들을 대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장경준 2015c:146-147). 아직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살펴본 바로 향본은 텍스트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 |                              |                       |
|------------------------------|-----------------------|
| 1그룹: 『직해』(세종판), 『직해』(공주판 이후) | (홍무18~19년을 이전)        |
| 2그룹: 『강해』, 『변의』, 『고경』        | (홍무22년을 또는 홍무18~19년을) |
| 3그룹: 『소의』 등                  | (홍무30년을)              |

먼저 1그룹은 『직해』의 여러 이본이 해당한다.<sup>23)</sup> 조항의 개수(본문 기준 458조)와 배열 순서가 나머지 향본과 다르고,<sup>24)</sup> 내용상으로도 가장 앞선 시기의 홍무율을 반영한다.<sup>25)</sup> 특히 이본의 계통에 따라 저본의 홍무율이 차이

22) 이 글에서 향본은 『부례』에서 鄉本이라 지칭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향본의 내용 7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책은 『직해』와 『강해』뿐이므로, 이들을 나머지 향본과 구분하는 의미로 '분명한 향본'이라 표현하였다.

23) 『직해』의 계통별 판본 목록은 이 글의 [붙임 1] 참조.

24) 『직해』의 이본 가운데 17세기에 간행된 진주판, 낙안판, 평양판 계통의 책에는 16세기에 간행된 세종판, 공주판, 광주판에는 없던 懸帶關防牌面조와 吏典代寫招草조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임란 이후 『직해』를 다시 간행하면서 다른 대명률 서적에 있으나 『직해』에 없던 조문을 추가한 것일 뿐이지, 저본을 달리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해』의 저본이 된 홍무율에는 懸帶關防牌面조와 吏典代寫招草조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세종판이 나머지 판본보다 앞선 홍무율을 반영한다.<sup>26)</sup> 그동안 『직해』는 발문의 연대인 1395년(홍무 28년)을 중시하여 그에 가까운 홍무22년율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었으나, 홍무 18~19년율 이전의 홍무율을 반영한 부분이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2그룹은 『강해』, 『변의』, 『고경』이 해당한다. 2그룹부터는 조항의 개수(총 460조)와 배열 순서가 일치한다. 『강해』와 『변의』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율문 내용이 거의 차이가 없고,<sup>27)</sup> 『고경』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sup>28)</sup> 현전본 『변의』에 홍무 19년의 서문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홍무18~19년율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고, 명태조실록에서 홍무 22년에 30권 460조를 완성하였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홍무22년율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전본 『변의』의 텍스트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sup>29)</sup> 후자의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3그룹은 『소의』 등이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홍무30년율을 반영한 주석서 사이에서도 율문의 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종종 관찰되며, 일부는 16세기 후반에 『부례』를 편찬하면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sup>30)</sup> 이 때

25) 예를 들어 『직해』에 懸帶關防牌面조가 없는 것은, 이 조항의 내용이 홍무 16년에 만든 ‘朝參牙牌律’을 반영한 것이므로(박성중, 앞의 글, 180면), 『직해』가 홍무 16년 이전의 홍무율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항본 및 홍무30년율에 모두 懸帶關防牌面조가 있으므로 『직해』의 홍무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앞선다고 할 수 있다.

26) 예를 들어 朝見留難조에서는 『직해』 세종판에서 ‘侍儀官’이라 한 것이 공주판부터는 “儀禮司官”으로 바뀌었고, 나머지 항본과 홍무30년율에는 모두 “儀禮司官”으로 되어 있다. 이는 명초에 조현(朝見)을 담당하는 관청인 의례사(儀禮司)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조현을 담당하는 관원을 “侍儀官”이라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직해』 세종판의 이 부분은 의례사를 설치한 시점인 홍무 9년(또는 4년) 이전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장경준, 『고마자와대학과 호사문고에 소장된 『대명률직해』 고판본에 대하여』, 『한국어학』 64(한국어학회, 2014), 139면).

27) 지금까지 필자가 본 바로 『변의』와 『강해』의 율문 내용이 차이를 보이는 사례는 위 (4), (5)의 예가 유일하며, 앞서 언급했듯이 『변의』의 이 부분은 홍무30년율과 일치하므로 후대에 첨입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28) 단, 문헌에 따라 글자의 출입(出入)을 보이는 사례는 많이 있다. 이러한 사례는 대체로 편찬자의 태도(『변의』의 경우) 내지 부주의(『고경』의 경우)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홍무율의 수정을 반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9) 앞의 본문 및 각주 15), 17), 18) 등 참조.

30) 홍무30년율(1397년)과 『부례』(1585년) 반포 사이에 편찬된 주석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현재 필자가 대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책으로는 『소의』 외에 『대명률석의(大明律釋義)』(1543)가 있다. 최근 복제본이 공개된 『율학해이(律學解頤)』(이하 ‘해이’로 부름)도 15세기에 편찬된 주석서이지만(정궁식, 『조선본 『율학해이』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54-1(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13)

수정되기 전의 홍무30년율이 17세기 후반 조선에서 향본의 내용으로 인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IV. 대명률 향본의 편찬과 간행

대명률 향본 가운데 조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된 책은 『직해』와 『강해』였고, 이들은 현재 전하는 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조선 전기(특히 15세기)에는 이 밖에도 고려 때부터 참조해 온 『당률소의(唐律疏議)』, 『지정조격(至正條格)』 등뿐만 아니라 『변의』, 『해이』, 『소의』 등의 다양한 대명률 주석서를 수입하여 간행하였다(정공식 2009). 이 가운데 『변의』, 『해이』, 『소의』 등은 아직 조사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므로, 여기서는 최근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직해』, 『강해』, 『고경』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직해』는 원간본이 1395년에 100여부 내지 388부가<sup>31)</sup> 전국에 배포된 이래 태종대와 세종대에 수정을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전본이 모두 16세기 이후에 간행된 것이라 그 실상은 조선왕조실록 등을 통해 극히 일부만 알 수 있다. 『직해』의 번역은 대명률을 적용해야 하는 실무자가 울문의 난해한 문장과 전문 용어를 잘 몰라도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서 번역하였고, 조선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였으며, 명과 다른 조선의 관습과 제도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현재 6가지 계통의 판본이 전하는데, 16세기 중후반에 간행한 세종판, 공주판, 광주판 외에 17세기 후반에 불완전하나<sup>32)</sup> 진주판, 낙안판, 평양판 등을 새로

48-49면), 울문의 인용이 제한적이고 주석 위주로 편집한 책이라 홍무율의 변화를 살피기 위한 자료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필자에게 『해이』의 복제본을 제공해주신 심희기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31) 김지의 발문에는 “以白州知事徐贊所造刻字 印出 無慮百餘本 而試頒行”이라 하였고, 어숙권의 『고사촬요(故事撮要)』 권4에는 “命書局印出 凡三百八十八件”이라 하였다. 두 기록이 모두 사실이라면, 처음에 목활자로 100여 부를 찍어 시험적으로 배포한 다음, 수정을 거쳐 388부를 추가로 찍어 배포했을 가능성이 있다.

32) 목판을 새로 새기면서 권12의 제5장, 6장은 해당 부분을 구하지 못하여 『강해』의 내용으로 대체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간행하여 보급하였다.<sup>33)</sup>

『강해』는 주석의 내용을 기준으로 증보되기 이전의 것과 증보된 것의 두 계통이 있다.<sup>34)</sup> 흥미롭게도 18세기 이후에는 오히려 증보되기 이전 원간본 계통의 책이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에 증보본 계통(즉 을해자본)은 현재 매우 드물게 남아 있고,<sup>35)</sup> 선행 연구에서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sup>36)</sup>

『강해』 원간본 계통은 대명률 주석서 중 『변의』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 연구<sup>37)</sup>의 견해대로 『강해』의 편찬자가 『변의』의 주석을 참조하여 발췌 인용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다른 가능성 또한 열어놓고 앞으로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sup>38)</sup> 편찬자에 관해서는 관련 기록이 없으므로

33) 『직해』의 번역 양상이나 현전본의 계통 및 서지적 특징에 대한 최신 연구는 장경준·진윤정, 앞의 글; 장경준, 「조선초기 대명률의 이두 번역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 52(우리어문화회, 2015); 진윤정, 「대명률직해에 사용된 조선한자어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2016) 등 참조.

34) 문소라, 앞의 글(각주 4)에 따르면 현전본 『강해』는 형태 서지를 기준으로 목판본 4가지(策營版, 嶺營版, 完營版, 미상), 활자본 3가지(乙亥字本, 丁酉字本, 全史字本) 계통이 전한다(문소라, 앞의 글(각주 4)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는 화봉문고 소장 을해자본 3권 1책, 대만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기영판본 30권 3책, 연변대학 도서관 소장 영영판본 2책 등이 있음). 이 가운데 을해자본이 이 글에서 설명하는 증보본 계통에 해당한다.

35) 지금까지 필자가 조사한 바로 증보본 계통 을해자본은 일본 존경각문고에 완질이 있고, 국내에는 권1(상)의 한 책이 영남대 도서관에, 권2~4와 권19~20의 두 책이 고려대 도서관 민중문고에, 권 28~30의 한 책이 화봉문고에 있을 뿐이다. 존경각문고 소장본은 총 31권(대명률 30권 가운데 권1(명례율)이 상, 하로 분리됨)이 26책으로 묶여 있다. 국내의 세 곳에 있는 잔권들은 모두 존경각 소장본과 같은 판본으로 보인다.

36) 黃彰健, 앞의 책(각주 4)에서는 존경각문고 소장본(을해자본)과 대만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기영판본)을 같은 것으로 전제하고 『강해』에 대해 을해자본의 내용을 기준으로 기술하였고, 田中俊光, 앞의 글은 을해자본에 증보된 주석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黃彰健, 앞의 책(각주 4)에 기술된 내용을 오류라고 비판하였다. 黃彰健, 앞의 책(각주 4)과 田中俊光, 앞의 글은 서로 다른 내용(즉 증보본 계통의 주석과 원간본 계통의 주석)을 가지고 『강해』에 대해 논한 것이다. 문소라, 앞의 글(각주 4)은 영남대와 고려대 도서관 소장 을해자본에 주석이 추가된 사실은 인지하였으나, 추가된 주석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고 내용 기술도 빠진 부분이 있다. 또한 佐藤邦憲, 『明律·明令と大誥および文形條例』, 『中國法制史－基本資料の研究』(滋賀秀三 編, 東京大學出版會, 1993), 466면에서 『강해』를 「正德五年刊」(1510)으로 표시한 것도 이본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정공식·조지만, 앞의 글, 23면에서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중국에서 편찬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기술한 것도 을해자본에 『이문집람』이 인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37) 黃彰健, 앞의 책(각주 4); 田中俊光, 앞의 글; 심희기, 「주석서로서의 대명률강해」, 『『대명률』 및 『대명률직해』에 관한 종합적 검토와 이해』(공동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구결학회·한국법사학회, 2016), 113-123면 등 참조.

38) 현전본 『변의』와 원간본 계통 『강해』의 주석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해』의 주석이 과연 『변의』의 내용을 발췌 인용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관찰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이것이 중국에서 수입한 주석서를 다시 간행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첫째로 중국에는 『강해』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 둘째로 세종실록 기사에 “講解律”에 대해 중국에서 반사하여 준 책이 아니라고<sup>39)</sup> 한 사실, 셋째로 뒤에 증보한 주석 중에 조선에서 최세진이 편찬한 『이문집람』이 포함된 사실, 넷째로 이 책이 『직해』와 함께 조선 후기까지 널리 활용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강해』는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편찬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간본의 편찬 시기는 실록에 대명률과 관련된 “講解”의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세종대로 추정되지만, 이 계통의 현전본은 모두 18세기 이후에 간행된 것들이다.

『강해』 증보본 계통(을해자본)은 원간본 『강해』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각 조항의 뒷부분에 새로운 주석을 추가하였다(붙임 2 참조). 필자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추가된 주석은 『변의』, 『해이』, 『소의』, 『당률소의(唐律疏議)』를 중심으로 하고, 『직인석의(直引釋義)』, 『석문(釋文)』, 『지남(指南)』,<sup>40)</sup> 『이문집람(吏文輯覽)』, 『무원록(無冤錄)』 등에서 글자나 용어에 대한 풀이를 보충하였다.<sup>41)</sup> 증보본 계통의 편찬 시기는 성종이 “『해이』와 『변의』의 글을 대명률에 첨입하여 간행하라”<sup>42)</sup>고 명한 사실을 감안하면 1478년이 유력하지만, 『소의』의 수입 시기가 1480년으로 추정되는 점, 『이문집람』의 편찬 시기가 1539년인 점을 고려하면 현전본의 간행 시기는 1539년 이후로 보아야 한다.<sup>43)</sup> 주석의 증보가 1478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sup>44)</sup>

『고경』은 이두번역문이나 율문 이외의 주석을 전혀 신지 않고 오직 율문만 수록한 희귀본이다. 아직 내용 검토가 진행 중이나, 『강해』와 비슷한 시기

39) “今講解律 … 既非中國頒降成書 …”(세종실록, 25년(1443) 10월 16일 기사)

40) 『이학지남(史學指南)』을 가리킨다.

41)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될 여지도 있으며, 이에 관한 상세한 소개는 후속 발표를 기약한다.

42) “璿曰 解頭辨疑之書 添入大明律刊行 則用律之時 便於考閱 庶無誤矣”(성종실록, 9년(1478) 12월 11일 기사).

43) 현전하는 『강해』 을해자본들은 판식이나 지질, 활자의 상태 등 형태서지의 측면에서도 16세기 후반에 간행된 책으로 보인다.

44) 중국에서 『대명률』을 반포할 때 홍무 연간에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졌고, 조선에서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반포할 때에도 세조~성종 연간에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참고할 만하다.

의 흥무율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자(誤字)가 많고 속자(俗字), 이체자(異體字)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편집도 조잡하게 되어 있는 지방판이다. 임진왜란 이전 간행본은 분명하지만 간기(刊記) 등이 전혀 없어 정확한 간행 시기는 미상이다([붙임 3] 참조).<sup>45)</sup>

이상 소개한 현전본들의 간행 시기를 살펴보면, 『직해』는 16세기 중후반과 17세기 후반에 간행된 책들인 반면, 『강해』는 을해자본을 제외하면 18세기 후반 이후에 간행된 책들이 많고 특히 1903년에 찍은 전사자(全史字)본이 대량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직해』와 『강해』의 실용 양상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데 현재 남아 있는 책의 수량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직해』가 전국적으로 간행 보급된 이유가 무엇이며,<sup>46)</sup> 주석이 증보된 『강해』는 임란 이후에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주석이 매우 소략한 원간본 계통 『강해』가 18세기 후반부터 집중적으로 간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해』와 『강해』가 조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된 것은 과거제의 실시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에서 법을 적용해야 할 율관(律官)의 양성과 채용에는 율과(律科) 시험과 취재(取材)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터이다. 율학생도들은 기본적으로 대명률과 국전(『경제육전』, 『경국대전』), 『무원록』을 익혀야 했는데,<sup>47)</sup> 특히 대명률은 책을 보지 않고 외워야 하는 배강(背講) 과목이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역사적인 사실들<sup>48)</sup>을 고려하

45) 『고경』의 자세한 서지 사항과 내용에 대한 소개도 원본의 추가 조사와 상세한 내용 대교를 거친 후속 발표를 기약한다.

46) 현전하는 『직해』 평양판 계통의 책 중에는 1687년 내사본이 2종(서강대본, 개인소장본), 1786년 내사본이 1종(규장각본) 남아 있다(장경준·진윤정, 앞의 글, 575면). 내사본은 임금이 내려주는 중요한 책이므로, 이들의 존재는 17~18세기에도 『직해』가 증시되었으며 관 주도로 보급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47) 『경국대전』에 규정된 율과의 시험 과목은 『대명률』(背講), 『경국대전』, 『무원록』, 『당률소의』, 『해이』, 『변의』(이상 臨文考講) 등이었고, 『속대전』(1746)에서 『당률소의』, 『해이』, 『변의』를 폐지하고 『대명률』, 『경국대전』, 『무원록』만 시험 과목으로 남긴 이래 조선말까지 지속되었다.

48) 대명률이 조선조 내내 형사 사건 처결에 일반법의 지위를 유지한 점, 율과의 과거 시험과 취재에서 대명률을 가장 중요시한 점, 대명률의 번역서인 『직해』가 15세기부터 17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된 점, 대명률의 주석서인 『강해』가 15~16세기에 증보본이 편찬되었으나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증보되기 이전의 원간본 계통이 널리 보급된 점 등이다.



면, 『직해』와 『강해』는 율학생도들에게 널리 읽혔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대명률을 학습하는 율학생도의 입장에서 보면, 대명률의 내용을 조선의 실정에 맞추어 쉽게 번역 해설한 『직해』는 대명률에 입문한 초학자에게 특히 유용했을 것이고, 15세기 당시 최고의 참고서였던 『당률소의』, 『해이』, 『변의』, 『소의』 등의 주요 내용을 발췌 편집한 『강해』는 대명률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18세기 후반 이후 『직해』의 새로운 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증보된 주석 부분이 없는 『강해』가 널리 보급된 것은, 이 무렵부터 대명률의 독자들에게 『직해』가 더 이상 친절한 해설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sup>49)</sup> 원간본 계통의 『강해』로 대체되고, 이전에 증보본 계통의 『강해』가 했던 자세한 참고서의 역할은 새로 수입하여 간행한 『부례』<sup>50)</sup>가 대신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조선에서 간행된 『부례』에 표시된 대명률 “향본(鄕本)”의 내용에 부합하는 책이 무엇인지, 향본의 텍스트와 홍무율의 관계는 어떠한지, 대표적인 향본의 편찬과 간행의 실상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고찰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부례』에 언급된 향본에 완전히 부합하는 책은 『직해』와 『강해』이고, 그 밖에 『고경』, 『변의』, 『소의』 등도 향본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대교 작업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49) 『직해』가 처음 만들어진 1395년 무렵에는 독자들이 이두 번역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현실 언어와 괴리되어 400년 가까이 지난 18세기 후반에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당시의 구어가 반영된 한글 자료와 대명률의 직해문을 비교하여 읽어보면 쉽사리 알 수 있다.

50) 조선의 간행자는 바로 이 『부례』에다 『직해』와 『강해』를 주로 가리키는 “향본”의 내용을 비교 자료로 추가해 넣은 것이다.

이들은 반영된 홍무율의 시기에 따라 크게 홍무 18~19년 이전의 홍무율을 반영하는 『직해』, 홍무22년을 또는 홍무18~19년율을 반영하는 『강해』·『변의』·『고경』, 홍무30년율을 반영하는 『소의』 등의 세 그룹으로 나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현전본의 조사 결과, 『직해』는 1395년에 원간본 간행 이후 16세기 중후반과 17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으며, 『강해』는 세종대에 원간본 간행 이후 16세기 후반까지 주석을 증보한 계통이 쓰이다가 18세기 후반부터 증보되기 이전의 원간본 계통이 널리 보급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강해』 율해자본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강해』가 조선에서 편찬한 주석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과, 『직해』와 『강해』의 지속적인 간행이 과거제의 실시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논하였다. 그리고 아직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은 희귀본인 『고경』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편찬 간행한 대표적인 대명률 서적인 『직해』 및 『강해』와 관련하여, 기존에 널리 알려진 “조선에 실제 적용된 대명률은 《대명률직해》가 아닌 《대명률강해》”라는<sup>51)</sup> 인식은 반성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두 책은 조선에서 형사 사건의 처결을 담당할 실무자에게 필요한 대명률의 번역서(『직해』)와 주석서(『강해』)로서 적어도 18세기까지 나란히 사용되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sup>52)</sup>

이상 논의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아직 조사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후속 연구를 기약하며 이 글을 마친다.

51)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법제”(박병호); 정궁식·조지만, 앞의 글, 24면; 정궁식, 앞의 글(각주 8), 77면 등 참조.

52) 이와 관련하여 임상혁, 『소송법서 『相避』의 성격과 명률의 문제』, 『법사학연구』 27(한국법사학회, 2003)에서 16세기의 소송법서 5종에 인용된 대명률 율문을 비교한 결과, 문헌에 따라 『직해』의 율문과 일치하는 사례와 『강해』의 율문과 일치하는 사례가 혼재함을 밝힌 것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참고문헌\*

『大明律』(15세기). 고경박물관 소장 원본·복제본.  
 『大明律直解』(1395). 각 소장처의 원본·복제본 및 보경문화사(1986), 서울대학교 규장각(2001) 영인본.  
 『大明律講解』(15세기). 각 소장처의 원본·복제본 및 서울대학교 규장각(2001) 영인본.  
 『大明律附例』(1585). 서울대학교 규장각(2001) 영인본.  
 『律解辯疑』(1386). 후룡강인민출판사(2002) 점교본(中國珍稀法律典籍續編 제3책: 明代法律文獻, 楊一凡 點校).  
 『律學解頤』(15세기). 최종고 교수 소장 복제본의 복제본(원본 소장처 미상).  
 『律條疏議』(1461). 후룡강인민출판사(2002) 영인본(中國律學文獻 제1집: 明嘉靖23年 黃巖符驗重刊本).  
 『大明律釋義』(1543). 미간행 복제본(소장처 미상; 明嘉靖31年 廣東布政使司重校刊本).  
 『大明律集解附例』(1596). 대만학생서국(1970) 영인본.  
 『大明律附例箋釋』(1612). 일본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소장본(<http://shanben.ioc.u-tokyo.ac.jp/>).  
 『大明律例診解』(18세기).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본(<http://www.ndl.go.jp/>).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강보유, 「연변대학교 도서관 소장 한국본 고문헌 자료」, 『해외 한국본 고문헌 자료의 탐색과 검토』, 삼경문화사, 2012, 223-235.  
 국립문화재연구소,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 일본 존경각문고 소장 한국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남권희, 「『대명률직해』의 서지학적 고찰」, 『고서연구』 12, 한국고서연구회, 1995, 130-139.  
 문소라, 「조선시대 간행의 『대명률』 주석서 판본 분석」,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12.  
 \_\_\_\_\_, 「조선시대에 간행된 『대명률강해』 판본 연구」, 『고인쇄문화』 21, 청주고인쇄박물관, 2014, 219-247.  
 박병호, 『한국법제사』, 민속원, 2012.  
 박성중, 「『대명률직해』 이두의 예비적 고찰」, 『진단학보』 96, 진단학회, 2003, 289-231.  
 \_\_\_\_\_, 「조선 전기 이두 번역문의 문체와 어휘」, 『한국어학』 53, 한국어학회, 2011, 29-59.  
 \_\_\_\_\_, 「명률의 변천과 문체, 그리고 『대명률직해』의 저본」, 『국어사연구』 17, 국어사학회, 2013, 167-196.  
 박희숙, 「대명률직해의 이두연구」, 명지대 박사학위논문, 1985.  
 법제처 편, 『대명률직해』(법제자료지 제13집), 법제처, 1964.  
 심희기, 「一人償命 답론에 대한 재고」, 『법사학연구』 51, 한국법사학회, 2015, 43-68.  
 심희기, 「주석서로서의 대명률강해」, 『『대명률』 및 『대명률직해』에 관한 종합적 검토와 이해』(공동

\* 1차 자료의 연대는 알려진 원간(原刊) 연대를 참고로 적은 것이며, 이 글에서 이용한 영인 자료는 원간 이후의 판본이나 사본이 대부분임을 밝힌다. 또한 한국어로 쓴 논저의 한자 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었다.

- 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구결학회·한국법사학회, 2016, 113-123.
- 안병희, 「대명률직해 이두의 연구」, 『규장각』 9,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85, 1-22.
- \_\_\_\_\_, 「『대명률직해』의 서명」, 『한국어연구』 1, 한국어연구회, 2003, 117-140.
- 원창애 외, 『조선시대 과거제도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 윤국일 역, 『신편 경제육전』, 신서원, 1998.
- 윤훈표·임용한·김인호, 『경제육전과 육전체제의 성립』, 혜안, 2007.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개정증보판), 집문당, 2000.
- 임상혁, 「소송법서 『相避』의 성격과 명률의 문제」, 『법사학연구』 27, 한국법사학회, 2003, 231-245.
- 장경준, 「일본 내각문고와 호사문고에 소장된 『대명률직해』의 서지에 관한 기초 연구」, 『어문논집』 68, 민족어문학회, 2013, 329-356.
- \_\_\_\_\_, 「고마자와대학과 호사문고에 소장된 『대명률직해』 고판본에 대하여」, 『한국어학』 64, 한국어학회, 2014, 117-168.
- \_\_\_\_\_, 「조선초기 대명률의 이두 번역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 52, 우리어문학회, 2015, 451-490.
- \_\_\_\_\_, 「花村美樹의 대명률직해 교정에 대하여」, 『규장각』 46, 서울대학교 규장각, 2015, 175-200.
- \_\_\_\_\_, 「대명률직해 교감의 방법과 기록 방안」, 『한국어학』 68, 한국어학회, 2015, 137-160.
- 장경준·진윤정, 「『대명률직해』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 『서지학연구』 58, 한국서지학회, 2014, 549-590.
- 장경준·진윤정·허인영, 「『대명률직해』의 정본 확정을 위한 기초 연구(1) - 고려대 도서관과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을 중심으로 -」, 『국어사연구』 16, 국어사학회, 2013, 127-172.
- \_\_\_\_\_, 「『대명률직해』의 정본 확정을 위한 기초 연구(2) - 경북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충남대 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그리고 일본 소케문고(宗家文庫) 소장본을 중심으로 -」, 『어문학』 122, 한국어문학회, 2013, 269-320.
- 장윤희, 「『대명률직해』의 서지학적 고찰」, 『진단학보』 96, 진단학회, 2003, 265-288.
- 정공식, 「조선전기 중국법서의 수용과 활용」, 『서울대학교 법학』 5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9, 35-80.
- \_\_\_\_\_, 「조선본 『율학해』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54-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13, 47-74.
- 정공식·조지만, 「대명률 해제」(서울대학교 규장각 편(2001)에 실림), 2001, 7-60.
- \_\_\_\_\_, 「조선전기 『대명률』의 수용과 변용」, 『진단학보』 96, 진단학회, 2003, 205-242.
- 조선총독부중추원 편, 『교정 대명률직해』, 경인문화사, 1936/2000.
-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 대명률과 국전 -』, 경인문화사, 2007.
- 진윤정, 「대명률직해에 사용된 조선한자어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6.
- 천혜봉, 『일본 蓬左文庫 한국전적』, 지식산업사, 2003.
- 高塩博, 「東京大学法学部所蔵の明律註積書 - 『大明律例診解』『大明律例訳義』『大明律例註解』 -」, 『国学院雑誌』 82-9, 國學院, 1986, 40-52.
- 藤本幸夫, 「宗家文庫藏朝鮮本に就いて: 『天和三年目錄』と現存本を對照しつつ」, 『朝鮮學報』 99·100, 朝鮮學會, 1981, 195-224.
- 楊一凡, 『洪武法律典籍考證』, 法律出版社, 1992.

- 楊一凡·宋國範, 『大明律直解所載明律與洪武三十年律對勘表』, 『中國珍稀法律典籍集成 乙編 第一冊: 洪武法律典籍』, 科學出版社, 1994, 942-983.
- 田中俊光, 『朝鮮刊『大明律講解』について』, 『東洋法制史研究会通信』 第28号, 東洋法制史研究会 ([http://www.terada.law.kyoto-u.ac.jp/tohoken/28\\_tnk.htm](http://www.terada.law.kyoto-u.ac.jp/tohoken/28_tnk.htm)), 2015.
- 佐藤邦憲, 『明律・明令と大誥および文形條例』, 『中國法制史 - 基本資料の研究』(滋賀秀三 編), 東京大學出版會, 1993, 435-472.
- \_\_\_\_\_, 『明の律編纂考 - 洪武年律編纂の二・三の史料の再検討から -』, 『法律論叢』 67권 2・3 호, 明治大學法律研究所, 1995, 427-448.
- 花村美樹, 『大明律直解 解説』(조선총독부증추원 편(1936)에 실림), 1936, 1-24.
- 黃彰健, 『明清史研究叢稿』, 臺灣商務印書館, 1977.
- \_\_\_\_\_, 『明代律例彙編』, 臺灣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1979.
- 何勤華, 『明代律學的開山之作 - 何廣撰《律解辯疑》簡介』, 『法學評論』 2000年第5期, 武漢大學出版, 2000, 137-140.

## [붙임 1] 지금까지 알려진 『대명률직해』의 계통별 판본 목록

계통	간행연대	소장처	청구기호 / 비고	
세종 13년 수정본	세종관	16세기 중엽	일본 호사문고(逢左文庫)	逢左文庫 103-44 1-4
			일본 고마자와대학 도서관	濯足 763 1-5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	공주관	16세기 중엽 (1546년)	일본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	漢 9234 1-4
			고려대 도서관 만송문고	만송 B7-A118B 1-5
	광주관	16세기 후반	서울대 규장각	古 5130-11-v.1-4
			서울대 규장각	奎 5938
			연세대 도서관	고서 귀 675.0
			통문관	(청구기호 없음)
			서울대 규장각 일사문고	一叢古 349.2-D131
			계명대 도서관	(이귀) 349.14 고사경대 1-2
			불명	※문소라(2012)의 '태화나주판'임
	진주관	17세기 후반	경상대 문천각	古(하남) B131C 고51ㄷ v.2-4
			대구가톨릭대 도서관	동369.12 대 34 1-4
			고려대 도서관 만송문고	만송 B7-A118 2, 4
	낙안관	17세기 후반	대구가톨릭대 도서관 석전문고	동369.12 대 34 1-4
			계명대 도서관	(이) 349.14 고사경ㄷ 1-4
			고려대 도서관	B7-A41 1-3
			경북대 도서관	古中 340.962 대34
			통문관	(청구기호 없음)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WB23-1
			일본 대마도 역사민속자료관	宗家文庫 漢籍 朝鮮刊本 B-6 1-1, 2, 3, 4, 5, 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B131C-2
			불명	※花村美樹(1936)의 '비변사본'임
	평양관	17세기 후반 (1686년)	서울대 규장각	貴 1709-v.1-4
			충남대 도서관	고서史 政法類 73. 1-4
			서강대 도서관	(도서 정리중: 청구기호 미정)
			서울대 규장각 일사문고	一叢古 349.2-D131 v.15-22, v.23-30
			고려대 도서관 만송문고	만송 B7-A118A 1-3
			불명	※문소라(2012)의 '평양판'임
			불명	※남권희(1995)의 이돈주 소장본임

※ 이 목록은 장경준·진윤정(2014:581-582)의 표 내용을 요약하고 보완한 것이다.

[붙임 2] 고려대도서관 민송문고 소장 『대명률강해』 을해지본

還在故錐改嫁之婦並同見奉之條上下侵  
 凌當歸一律無絕道故也奴婢於家長合則  
 有恩敬則無義若已離去毆同凡人比事合  
 情而律意見矣

**凡祖父母父母為人所毆子孫即時  
 救護而還毆非折傷勿論至折傷以上減凡同三  
 等至死者依常律**

**謂子孫原不曾隨從祖父母行及同行  
 無共謀毆人之意被人毆其祖父母父母隨  
 即救護還毆非折傷勿論至折傷以上減凡  
 同傷三等者謂折一齒杖七十之類至死者  
 依常律其父祖子孫相率同謀共毆人者仍  
 依凡人首從論其有祖父母之尊長毆擊祖  
 父母父母止可解救不得毆之輒毆者自依  
 毆尊長之律若夫之祖父母父母共妻之祖  
 父母父母相毆子孫亦不合即毆夫之  
 祖父母父母如毆者亦依常律**

**若祖父母父母為人所殺而子孫擅殺行兇  
 人者杖六十其即時殺者勿論**

辨起本條云還毆者即子孫因救護而毆前

人若雇工人及奴婢不為同氣一體之親止  
 可解救不得毆之如毆之者各盡本法論之  
 解頤凡祖父母父母為人所毆至死者依  
 常律解頤曰如甲之祖父母父母被乙丙丁毆  
 甲之子孫戊己即時走來救護不開戊己還  
 打乙丙丁內損吐血皆勿論若甲戊己與丙  
 丁還毆戊折跌乙肢體者減凡同三等戊  
 合杖七十徒一年半其甲己元非隨同共毆  
 之人難科從罪乙至死者戊坐絞罪故曰依  
 常律問曰家長張三被良人李五孫四毆打  
 張三奴婢王九丁七即時來救還毆得同子  
 孫還毆否答曰奴婢王九丁七本非張三血  
 屬之親難同子孫之例若王九丁七毆良人  
 李五折手一指者王九合杖一百仍依奴婢  
 毆良人加一等杖六十徒一年丁七為從杖  
 一百之類律條疏議凡祖父母父母被人毆  
 打為子孫者即時救護而還毆行兇之人者  
 不至折傷不論毆至折傷以上減凡同傷三  
 等毆而至死依毆至死律處絞故曰自依  
 常律言不得減從流後也若祖父母父母被



入殺死而子孫不苦官府擅將行兇之人殺死者杖六十其因祖父母父母被人殺死之時隨即將行兇之人殺死以復讎者勿治子孫之罪問曰子孫還毆他人若先同謀亦減等否答曰此亦指子孫原不曾與祖父母父母同謀從毆人亦無同謀人之意祖父母父母被毆還打之若祖父子孫同謀共毆人者仍依凡人首從論又問祖父母父母之尊長毆祖父母父母為子孫者許還毆否答曰止可救護不得還毆祖父母父母之尊長律若家長被毆雇工入止許救護不得輒毆他人若毆之者自依常人鬪毆論罪謹詳律意父母之讎不共戴天救而還毆情之切也故不傷亦待免科至折傷減凡人三等矜其為親也若親不死而毆殺讎人依毆律以責其罪親既死而擅殺讎人亦坐杖以治其辜其或親被毆死還毆兇身即特死亡得原其罪恕其情之切也

大明律議解卷第二十

**父祖被毆** 凡祖父母父母為人所毆子孫即時救護而還毆非折傷勿論至折傷以上減凡鬪三等至死者依常律謂子孫原不曾隨即救護還毆非折傷勿論至折傷以上減凡鬪傷三等者謂折一齒杖七十之類至死者依常律其父祖子孫相率同謀共毆人者仍以凡人首從論其有祖父母父母之尊長毆擊祖父母父母父母止可救護不合輒毆夫之祖父母父母若毆者亦依常律本條云還毆者即子孫因救護而毆也

者勿論

**父祖被毆**

凡祖父母、父母為人所毆子孫即時救護而還毆，非折傷，勿論；至折傷以上，止依常律。

【議曰】謂子孫原不曾隨從祖父母、父母行，及雖同行無共謀毆人之意，被人毆其祖父母、父母，隨即救護還毆。非折傷，勿論。「至折傷以上，減凡鬪傷三等」，謂折一齒、杖七十之類。至死者，依常律。其父祖子孫相率同謀共毆人者，仍以凡人首從論。其有祖父母、父母之尊長，毆擊祖父母、父母，止可救護，不可毆之，如輒毆者，自依毆尊長之律。若夫之祖父母、父母與妻之祖父母、父母相毆，子孫之婦亦合解勸，不合輒毆夫之祖父母、父母，若毆者，亦依常律。本條云「還毆者，即子孫因救護而毆」，惟工人、奴隸不為同氣一體之親，法論之。



※ [붙임 2]의 사진 3장은 을해자본 『강해』에서 권20의 마지막 父祖被毆조가 포함된 제59, 60, 61장을 보인 것이다.

※ [붙임 2]에서 마지막 사진 2장은 父祖被毆조의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대명률강해』 전사자본(규장각 영인본 404쪽)과 『을해변의』(흑룡강인민출판사 점교본 232쪽)을 보인 것이다.

[붙임 3] 고경박물관 소장 고판본 『대명률』



※ [붙임 3]의 사진은 같은 내용(권20의 마지막 父祖被毆조)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고경』의 제64장을 보인 것이다.

〈Abstract〉

## A Study on Korean Version (鄉本) of *Daminglü* (大明律)

Chang, Kyong Jun(張景俊)\*

*Daminglü*, the legal code of Ming dynasty, was established and promulgated in 1397 (Hongwu (洪武) 30). It had been revised a few times before the promulgation but now there are scarcely any materials that show the changes of legal code in Hongwu era, and the remaining books are mostly published in Joseon. A version of *Daminglüfuli* (大明律附例) published in Joseon introduced the contents which have differences with the legal code of Hongwu 30 under the name of “Korean version (鄉本)”. We investigated the contents to find the books which have contents corresponding to Korean version,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xt of Korean version and the legal codes in Hongwu era, then briefly described the compilation and publishing of typical Korean versions.

It turns out that *Daemyeongryul-Jikhae* and *Daemyeongryul-Ganghae* are the books corresponding to Korean version completely while *Daminglü* in possession of Gogyeong museum (古鏡博物館), *Lijiebianyi* (律解辯疑), and *Lütiaoshuyi* (律條疏議) have some contents of Korean version. According to our comparison and recension of *Daminglü* texts in progress, the books corresponding to Korean version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ree groups by

---

\* Korea University(高麗大學校)

the periods of reflected legal codes in Hongwu era. Group 1 reflects the legal code before Hongwu 18~19, group 2 reflects the legal code of Hongwu 22 or 18~19, and group 3 reflects the legal code of Hongwu 30.

*Daemyeongryul-Jikhae*, the Idu (吏讀) translation of *Daminglü*, had been originally published in 1395 then intensively published in the mid-to-late 16<sup>th</sup> and late 17<sup>th</sup> centuries. It seems that *Daemyeongryul-Ganghae*, an annotated version of *Daminglü*, was compiled in Joseon. After publishing of the original version in King Sejong era, the version including enlarged annotations had been used until late 16<sup>th</sup> century but the original version came into wide use again after late 18<sup>th</sup> century. The continuing publishing of *Daemyeongryul-Jikhae* and *Daemyeongryul-Ganghae* through the Joseon dynasty shows not only that there had been huge demand for these books in practical fields applying *Daminglü* on a criminal case, but also it had close connection to the enforcement of gwageo (科擧).

**[Key Words]** *Daminglü* (大明律), *Daminglüfuli* (大明律附例), Korean version (鄉本), *Daemyeongryul-Jikhae* (大明律直解), *Daemyeongryul-Ganghae* (大明律講解)

